

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22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·교육·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,
- 나.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,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47-1
- 시설규모 : 연면적 453.7㎡, 총 5층 (지하 1층, 지상 4층)
- 주요시설 : 사무실, 상담실, 강의실, 진료실, 아동돌봄실
- 인력운영 : 5명 (센터장 1명, 사무국장 1명, 사회복지사 3명)

나. 주요 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23. 1. 1. ~ 2025.12.31.)

○ 위탁업무

-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관리·운영 및 사업 일체
 - 일반 상담 및 법률, 노무 등 상담사업 운영
 - 한국어교육, 컴퓨터교실, 한국어자격증반 등 교육사업 운영
 - 문화체험 행사, 의료지원, 커뮤니티사업 등 운영

○ 소요예산 : 338,000천원(2022년)

- 산출근거 : 인건비 257,220천원, 운영비 41,000천원, 사업비 39,790천원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※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 ('22.05.12)

다.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

-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, 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.
- 다양한 기관(병원, 경찰서, 법률사무소, 노무사, 봉사자, 종교단체 등)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및 제18조

제7조(지원의 범위)

-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 9. 26., 2021.7.20.>
10.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

제18조(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-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(이하 “지원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 <개정 2021.7.20.>
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·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·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1.7.20.>

제20조(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)

-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5.14, 2017.1.5, 2021.7.20>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예산편성 요구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재위탁·재계약 추진계획
(외국인다문화담당관-20922, 2022.4.13.)

※ 작성자 :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 유지영(☎ 2133-5078)